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로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을 말한다.

2. “1종 시설물”이라 함은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 등 公衆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제2종 시설물”이라 함은 1종 시설물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의하여 시설물의 관리책임진 자는 이를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이를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한다.

5. “공공관리주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민간관리주체”라 함은 공공관리주체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유지관리”라 함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의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0. “유지관리업”이라 함은 관리주체로부터 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은 건설업법·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기간 등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기술의 개발, 소요인력의 양성, 시설물의 유지관리 체계의 개발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관리주체 기타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민간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9조 (유지관리업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건설업법·전기통신공사법·전기공사법 및 소방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당해 법률에 의하여 시설물의 개량·보수 및 보강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2.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그가 시공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경우

② 유지관리업자(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업자는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